

---

---

**주 곡 천 하 천 기 본 계 획 재 수 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

2024. 04.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주곡천은 2009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유역개발 및 도시화, 기상특성 변화, 하천개수사업으로 인한 수리·수문특성과 하도특성 변화, 유역 내 다양한 욕구에 따른 하천 환경적 측면의 여건변화 등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하천시설관리와 하천현황,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대장화 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바이다.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

## 1.3 계획의 추진 경위

- 1965. 12. : 주곡천 하천지정일자(충북111호)
- 2009. 01. :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완료
- 2023.~현재 :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표 1.3 - 1〉 주곡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연혁

구분	고시년도 및 수립내용		비고
	2009년(기수립)	2023년(금회)	
수립개요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고시번호(수립일자)	충청북도 고시 제2009-31호	현재 수립 중	
고시	내 용	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유역면적(km <sup>2</sup> )	25.95	25.90
	하천연장(km)	6.88	6.88

<향 후>

- 2023.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24. 0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4.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예정)
- 2024. 05. :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24.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 2024. 06. :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예정)

## 1.4 계획의 내용

### 가. 계획명

-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GG20080759, 2009.01.14.)에 대한 협의를 마침
  - 주곡천의 과업연장 6.88km 구간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유역면적은 기수립(09)과 비교하여 0.05km<sup>2</su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나. 공간적 범위

〈표 1.4 - 1〉 과업범위

하천명	구분	유역면적(km <sup>2</sup> )	하천연장(km)	하천의 구간		비고
				기점	종점	
주곡천	당초	25.95	6.88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큰골세천 합류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삼봉천(지방) 합류점	기수립
	금회	25.90	6.88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상가천(소) 합류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삼봉천(지방) 합류점	재수립

**다. 시간적 범위**

-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라. 사업시행자**

- 영동군

**마. 승인기관**

- 충청북도

**바. 기초유역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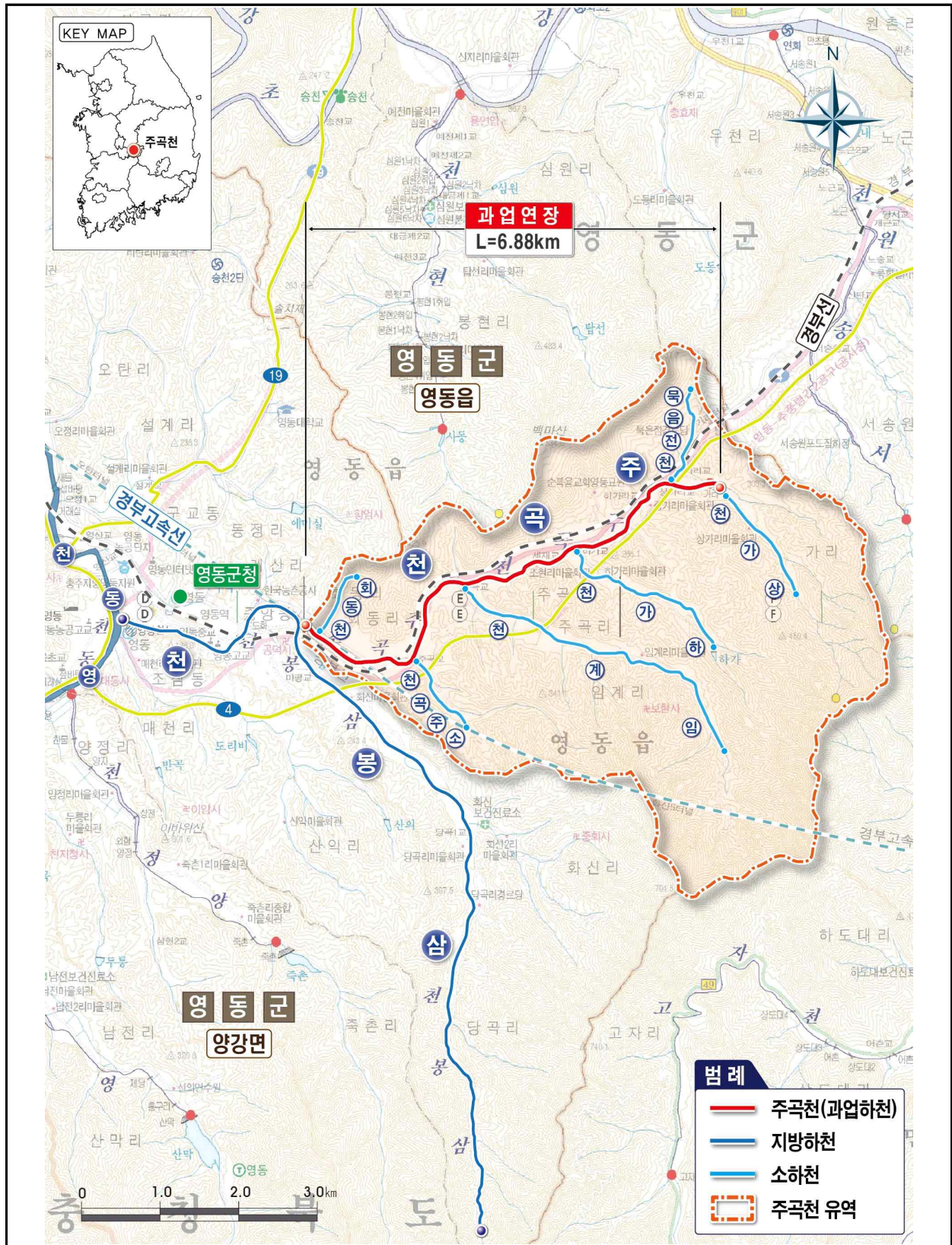
구분	산정 지점	부호	유역면적 A(km <sup>2</sup> )	유로연장 L(km)	평균폭 A/L(km)	형상계수 A/L <sup>2</sup>
주곡천 외 3개 하천	주곡천 종점(삼봉천 합류점)	GK00	25.90	10.36	2.50	0.24
	소주곡천(소) 합류후	GK10	24.22	8.75	2.77	0.32
	소주곡천(소) 합류전	GK11	21.87	8.75	2.50	0.29
	임계천(소) 합류후	GK20	20.46	7.43	2.75	0.37
	임계천(소) 합류전	GK21	13.14	7.43	1.77	0.24
	하가천(소) 합류후	GK30	11.52	5.76	2.00	0.35
	하가천(소) 합류전	GK31	7.93	5.76	1.38	0.24
	문능골세천 합류후	GK40	6.29	4.80	1.31	0.27
	문능골세천 합류전	GK41	6.04	4.80	1.26	0.26
	묵은점천(소) 합류후	GK50	5.29	4.23	1.25	0.30
	묵은점천(소) 합류전	GK51	4.24	4.23	1.00	0.24

**사. 하천수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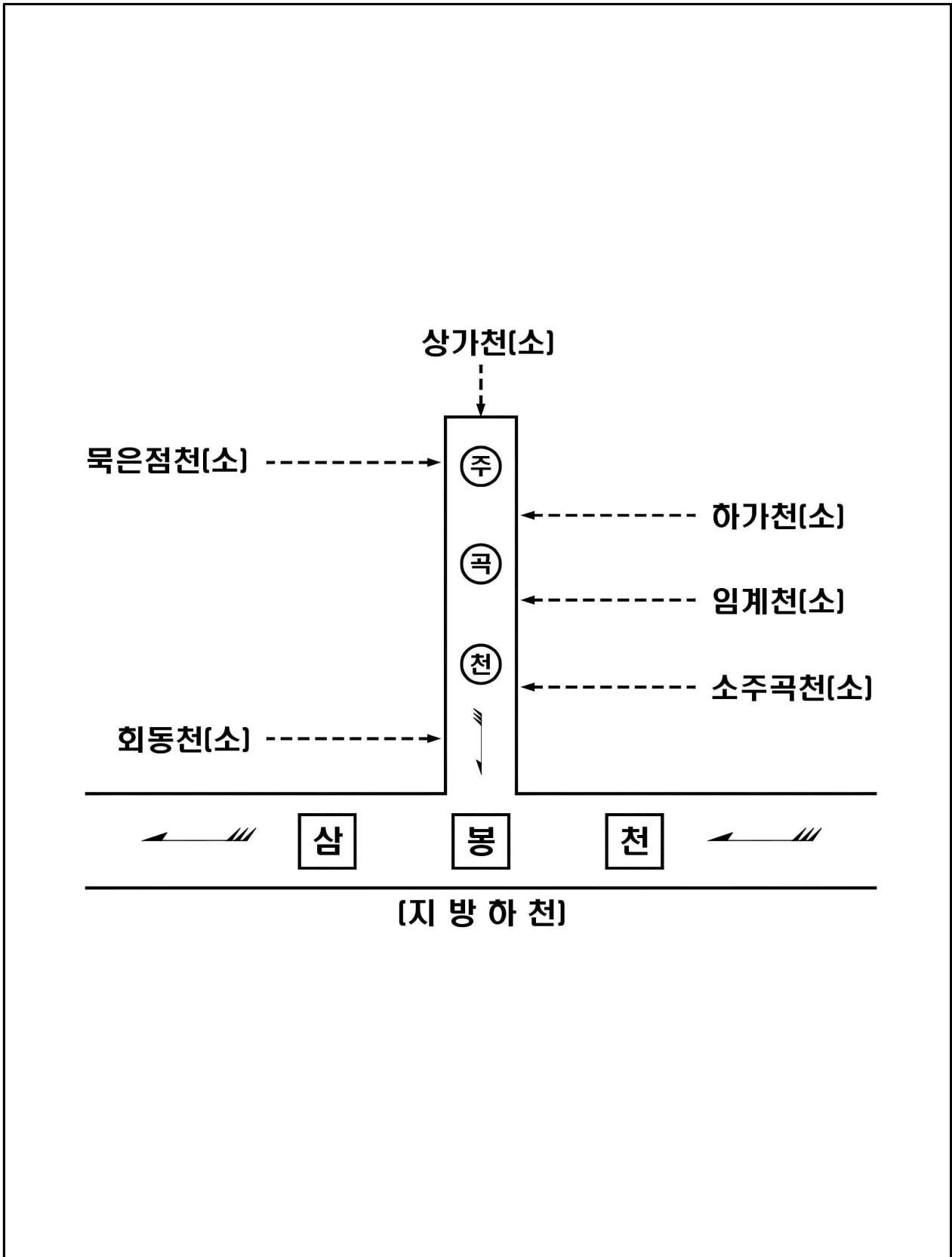
- 주곡천은 금강수계이며,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은 충북 영동 영동 가리에서 충북 영동 영동 삼봉천(지방) 합류점까지 6.88km이다.
- 주곡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은 회동천, 소주곡천 등 6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 2> 하천수계현황

본류	수 계				하천 등급	위 치		유역 면적 (km <sup>2</sup> )	유로 연장 (km)	하천 연장 (km)
	제1 지류	제2 지류	제3 지류	제4 지류		시 점	종 점			
금강					국가	전북 진안 진안 하신천(지방) 합류점	충남 서천 마서 금강하구둑 외곽선	9,912.15	397.79	360.70
금강	영동천				지방	충북 영동 양강 산막리 산막저수지 상류 산막1교	충북 영동 심천 금강(국가) 합류점	141.32	24.82	18.61
금강	영동천	삼봉천			지방	충북 영동 영동 당곡리	충북 영동 영동 영동천(지방) 합류점	44.99	12.34	11.50
금강	영동천	삼봉천	주곡천		지방	충북 영동 영동 가리	충북 영동 영동 삼봉천(지방) 합류점	25.90	10.36	6.88
금강	영동천	삼봉천	주곡천	회동천	소	충북 영동 영동 회동리 1	충북 영동 영동 회동리 395-127 주곡천(지방) 합류점	0.53	1.640	1.001
금강	영동천	삼봉천	주곡천	소주곡천	소	충북 영동 영동 주곡리 산43-16	충북 영동 영동 주곡리 427 주곡천(지방) 합류점	2.34	2.040	1.356
금강	영동천	삼봉천	주곡천	임계천	소	충북 영동 영동 임계리 108-2	충북 영동 영동 주곡리 524-11 주곡천(지방) 합류점	7.32	6.610	4.414
금강	영동천	삼봉천	주곡천	하가천	소	충북 영동 영동 임계리 202	충북 영동 영동 가리 927-8 주곡천(지방) 합류점	3.53	4.470	2.522
금강	영동천	삼봉천	주곡천	묵은점천	소	충북 영동 영동 가리 458-1	충북 영동 영동 가리 578-7 주곡천(지방) 합류점	1.05	2.130	1.048
금강	영동천	삼봉천	주곡천	상가천	소	충북 영동 영동 가리 27	충북 영동 영동 가리 378 주곡천(지방) 합류점	2.67	3.490	1.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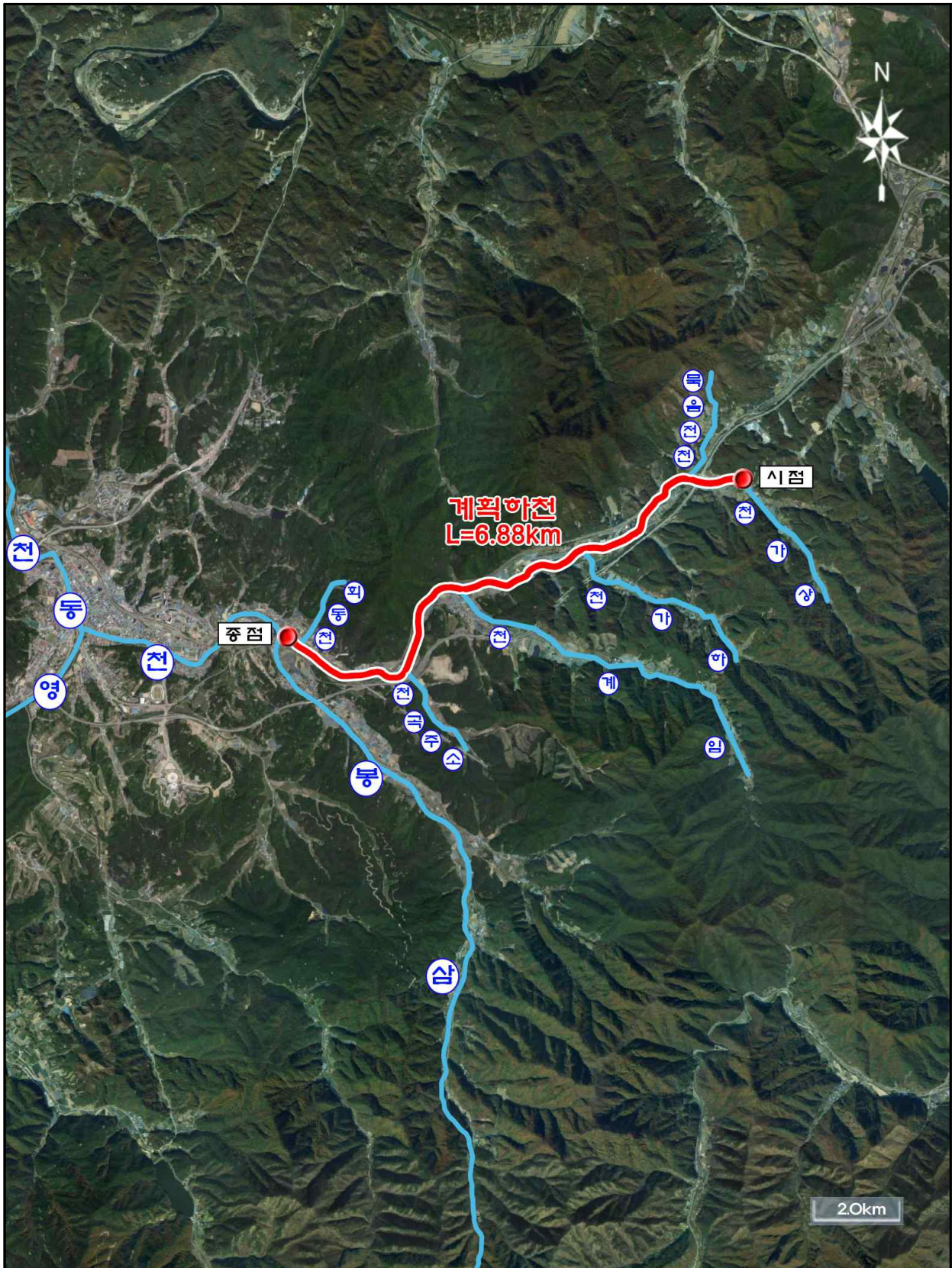


(그림 14 - 1) 주곡천 유역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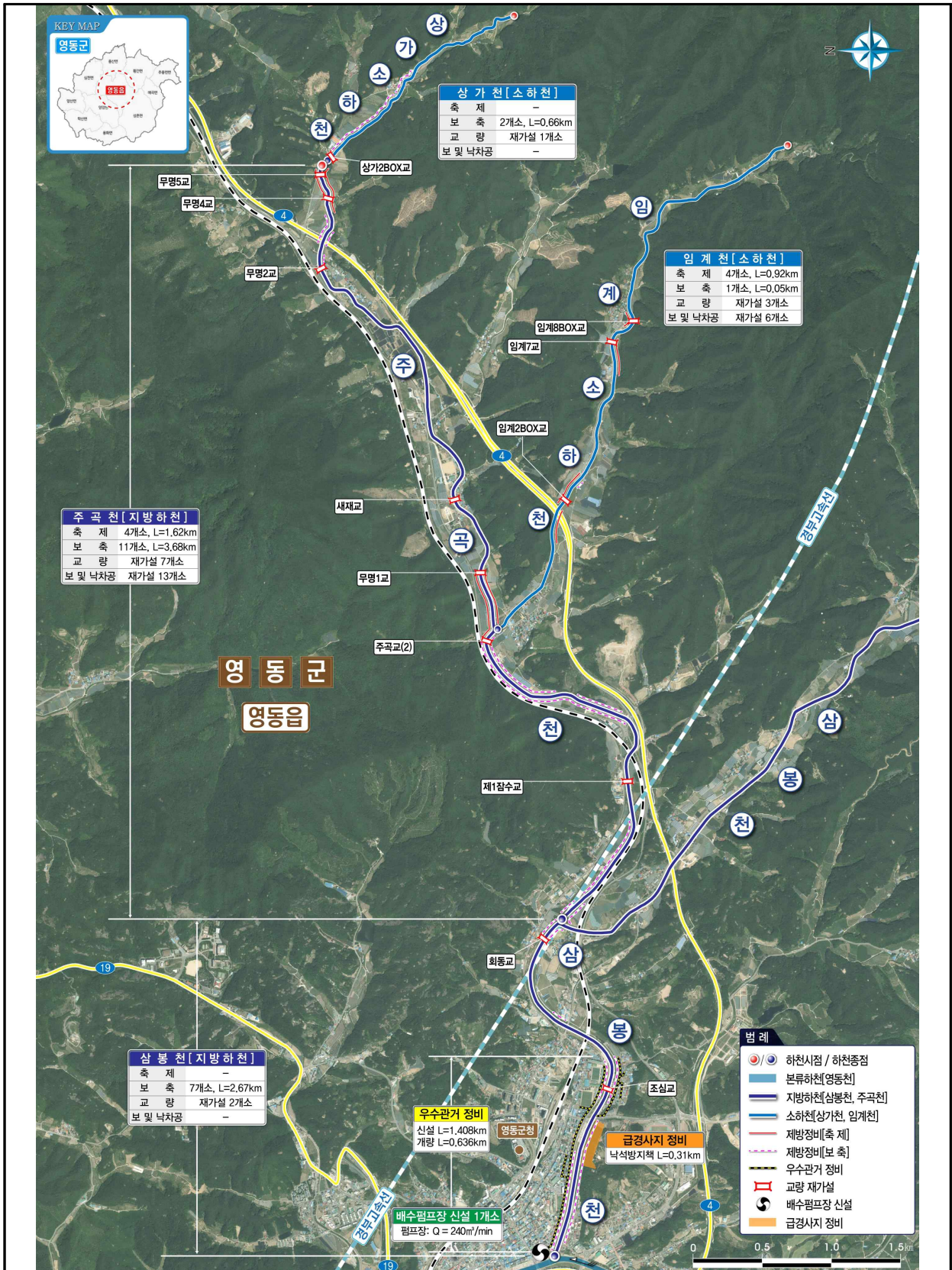


[그림 1.4 - 2] 하천 수계 모식도





(그림 1.4 - 3) 계획하천 인공위성도



(그림 1.4 - 4) 계획하천 위치도

## 1.5 대안의 설정

### 가. 대안의 종류

- 대안 선정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여야 한다.
- 대안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 나. 대안의 선정방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의거하여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였다.

〈표 1.5 - 1〉 대안의 선정방법

대안 종류	대안의 선정방법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1-300호

(1) 계획 비교

- 계획 미수립(No Action) 및 계획수립(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5 - 2> 계획비교

구 분		계획 미수립	계획 수립
내 용		No Action	Action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 생태계 변화 없음.	○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보호지역 영향 없음.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친환경 호안식생계획 수립으로 하천경관의 긍정적인 개선효과 기대됨
	수환경의 보전	○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 계획의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 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질 변화 없음.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에 미치는 영향 없음.	○ 환경기초시설에 미치는 영향 없음.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자원·에너지 순환에 영향 없음	○ 지자체 폐기물처리체계와 연계하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을 높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 없음.	○ 효율적인 토지이용구성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선정안			◎

**[2] 수요·공급**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본 계획에 가정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5 - 3> 대안별 수요·공급 비교·검토**

구분	대안1(치수계획 기준빈도:100년)	대안2(치수계획 기준빈도:50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수 안전도 확보 용이</li> <li>○ 설계 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에 부합되는 치수계획 수립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li> <li>○ 편입부지 및 공사비 저렴</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공사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공사 대상지역 증가</li> <li>○ 치수사업의 규모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li> <li>○ 최근 설계빈도의 상향 적용추세에 미치지 못함</li> </ul>
선정	◎	
선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크지만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치수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치수계획 및 기준 빈도를 100년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li> </ul>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8.12,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표 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공간적	시간적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수립시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반영여부	○ 관계 행정기관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하천 편입토지를 중심으로 계획 및 입지 검토	○ 계획하천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사업시행시 동·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 주변0.3km 이내	○ 공사시
			자연환경 자산	○ 토지, 습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사업시행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시 위락·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 주변1.0km 이내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질	○ 사업시행시 토사유출에 의해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계획하천 ○ 하류수계	○ 공사시	
			수리·수문	○ 하천 정비에 따른 제방 및 호안 변화가 예상되는 수계	○ 계획하천 ○ 하류수계	○ 공사시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공사장비 가동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 주변1.0km 이내	○ 공사시
			토양	○ 공사장비 폐유 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 공사시
			소음·진동	○ 공사장비 가동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 주변0.5km 이내	○ 공사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 관리방안 수립	○ 계획하천 ○ 영동군	○ 공사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하천 편입토지의 변화	○ 계획하천	○ 공사시 ○ 운영시	

## 2.2 평가항목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기 위해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2.2 - 1〉 평가 항목 선정(제외)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사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축제, 호안정비 등에 따른 지형변화 예상 ○ 토사유출, 사면발생 등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 계획하천 호안, 제방 및 구조물 등 설치에 따른 기존 하천의 경관 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장래 점·비점오염원 변화 발생에 따른 장래수질 변화 예상
		수리·수문	○ 계획하천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 하천정비에 따른 제방 및 호안 변화 예측·평가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토 양 ○ 공사시 폐유 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 발생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상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 사업시행 전·후 주변 토지이용 변화 검토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표 2.2 - 2〉 일반조사항목 및 제외항목 선정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일반조사 항목	기 상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 는 영향
제외항목	악취, 온실가스, 해양환경, 전파장해,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 2.3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및 관련 자료

### 가. 평가범위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표 2.3 - 1〉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구 분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범위 선정 사유
			공간적	시간적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하천 ○ 주변0.3km 이내	○ 공사시	○ 사업시행시 동·식물에 변 화가 예상
		자연환경 자산	○ 계획하천	○ 공사시	○ 토지, 습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 등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하천	○ 공사시	○ 사업시행시 지형 및 생태 축의 변화가 예상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계획하천 ○ 주변1.0km 이내	○ 운영시	○ 사업시행시 위락·경관의 변화가 예상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계획하천 ○ 하류수계	○ 공사시	○ 사업시행시 토사유출에 의 해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사업시행시 초기우수 및 오수에 의한 영향
		수리·수문	○ 계획하천 ○ 하류수계	○ 공사시	○ 하천정비에 따른 제방 및 호안의 변화가 예상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영동군	○ 공사시	○ 기상자료 분석·정리
		대기질	○ 계획하천 ○ 주변1.0km 이내	○ 공사시	○ 공사장비 가동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이 예상
		토 양	○ 계획하천	○ 공사시	○ 폐유 유출로 인한 토양 오 염이 예상
		소음·진동	○ 계획하천 ○ 주변0.5km 이내	○ 공사시	○ 공사장비 가동시 소음·진 동의 영향이 예상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하천 ○ 영동군	○ 공사시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 관리방안 수립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하천	○ 공사시 ○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의 변화



**나.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및 관련 자료**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평가항목별 예측·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관련 자료를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2.3 - 2>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및 관련 자료(1/2)**

구 분	평가항목		예측·평가 방법	관련 자료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행정계획과의 일관성 여부</li> <li>○ 다른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여부</li> </ul>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계획비교, 입지 대안 설정·분석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 현지조사를 통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존에 대한 영향을 문헌자료와 비교하여 예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자연환경 조사보고서</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li> <li>○ 사업관련 기본계획서</li> </ul>
		자연환경 자산	○ 토지, 습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자료와 비교하여 예측·평가	○ 환경부 문헌자료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를 통한 생태적 연속성 단절 여부 예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도 및 지질도</li> <li>○ 사업관련 기본계획서</li> </ul>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경관변화 예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지형분석</li> <li>○ 사업관련 기본계획서</li> </ul>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공사시 발생 토사로 인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연보</li> <li>○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li> <li>○ 하수도 시설기준</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li> <li>○ 사업관련 기본계획서</li> </ul>
			○ 현장인력에 의한 발생 오수의 영향 예측·평가	
		수리·수문	○ 하천정비에 따른 제방 및 호안 변화 예측·평가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표 2.3 - 2>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및 관련 자료(2/2)

구 분	평가항목		예측·평가 방법	관련 자료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계획하천 인근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분석·정리	○ 기상연보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부지정지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영향을 대기확산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평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기질 예측 모델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 대기질 측정자료
			토 양	○ 공사시 공사장비 폐유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예측·평가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을 거리감쇠식을 이용하여 예측·평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 환경진동의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통계연보 및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 예측·평가	○ 통계연보 ○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 건설공사 표준품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편입토지 이용 변화 예측·평가	○ 통계연보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개요


- 주관부서 : 영동군청
- 심의기간 : 2023년 12월 13일 ~ 2024년 01월 17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총 9명(협의기관 1명,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시민 2명)
- 주요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기타

〈표 3.1 - 1〉 심의위원 명단


구 성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영동군 부군수	김○○	공무원
위 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최○○	협의기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이○○	전문가
	도 환경정책과 환경협력교육팀장	강○○	공무원
	국토환경연구원 원장	신○○	전문가
	영동군청 환경과장	정○○	공무원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영동군협의회	김○○	전문가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마을대표	정○○	시민
	영동군 영동읍 중가리 마을대표	박○○	시민

###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대한민국 천연자원! 충북 영동 일라이트!



# 영 동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위촉 및 평가준비서 심의 요청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하오니, 심의 의견을 2024.01.1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등  
다. 심의위원 : 영동군 부군수 등 8명(불임 참조)

불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심의의견서 양식 포함)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각1부.(별송) 끝.

## 영 동 군



수신자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환경과장,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이진희 귀하,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영동군협의회 김기태 귀하,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이장 정호진 귀하, 영동군 영동읍 중가리이장 박희성 귀하

---

주무관                      조상인                      재난예방팀장                      김영진                      재난안전과장                      전결 2023. 12. 13.                      최길호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과-11685                      (2023. 12. 13.)                      접수

우    2914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    www.yd21.go.kr

전화번호    043-740-3932                      팩스번호    043-740-3909                      /    sangin0707@korea.kr                      /    비공개(6)

청렴 한 결음, 신뢰 두 결음

1/1

###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b>☑ 최○○ 위원 - 1</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락환경영향평가)</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의 이·치수 기능 및 환경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하·하류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ul> <p><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락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li> <li>- 자연환경보전관련 지역,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생태자연도, 식생 등 확인) 등 하천 주변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사·예측범위 확대</li> </ul> </li> <li>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li> <li>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설정해 대안별로 환경적 측면을 비교·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비교를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그 사유 제시</li> <li>- 대안별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여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이때 하천의 홍수범위 능력 확보(대안축제, 보축, 하도정비 등)를 계획구간별로 상세히 비교</li> <li>- 아울러, 보 및 낙차공 등 횡단시설물별로 현황(노후도, 연중, 낙차, 실이용 여부 등)과 기능(취수, 하상보호 등) 및 기능 상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안(철거, 존치, 재가설)을 상세히 비교</li> </ul> </li> </ol> </div>	<p style="text-align: center;"><b>☑ 최○○ 위원 - 2</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에 따른 현황, 사업계획에 따른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동·식물상 조사는 동·식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 하천이 자연경관 및 생태적으로 인근지역과 연결된 경우 수변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평가 시행</li> <li>- 수질조사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현황을 파악하고 중권역별 목표수질과 연계한 수질 목표를 설정해 관리방안 제시</li> <li>-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제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 계획을 토대로 치수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 방향 설정 필요</li> <li>○ 하위 실행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함</li> <li>-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약식전락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li> <li>-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평가 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li> <li>-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면적률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li> </ul> </li> <li>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li> <li>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의 계획이 추후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여야 함</li> <li>-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2024. 1.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p> </div>
<p style="text-align: center;"><b>☑ 이○○ 위원 - 1</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락환경영향평가)</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일원에 위치한 주곡천 하천기본계획(전체 하천연장 6.88km) 재수립 전락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으로, 아래 항목별 의견을 참조하여 전락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li> </ul> <p><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락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하류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주곡천이 합류하는 삼봉천과 주곡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상가천, 복은점천, 하기천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li> <li>○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권입토지 이외에도 하천구역과 홍수 범람 범위 등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li> </ul> </li> <li>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정비 시 현재의 하천 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12쪽)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하폭확장(하폭 공식에 따른 일괄적인 하폭 확장) 및 하도정비(저수로를 포함한 하상 준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li> </ul> </li> <li>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립과 급의 설계빈도가 상이 한 경우 이들 설계빈도 대안들(50년, 80년, 100년 빈도 등)에 대하여 홍수량과 홍수위, 침수범위, 피해예상 토지 등을 비교하여 하천의 설계빈도의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33쪽)</li> <li>* 기수립 설계빈도 50년과 급의 설계빈도 100년의 차이가 크므로(33쪽) 사업계획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대안 검토가 충분히 수행 되어야 함</li> <li>○ 하폭확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하천 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li> </ul> </li> </ol> </div>	<p style="text-align: center;"><b>☑ 이○○ 위원 - 2</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에서 제방만을 후퇴시키는 대안 및 제방만 증고하는 보축 대안을 다른 대안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와 인접한 지역, 보호 대상 토지 면적이 작은 경우 하천 구역과 홍수 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한 홍수범람원 관리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li> <li>- 호안 조성이 필요한 경우 현재 호안의 식생 천이 등 자연성을 고려하여 제방 축제 및 보축으로 인한 인공호안 조성을 지양하여 기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li> <li>- 제방 계획 수립 시 급경사 호안 조성과 과도한 하천 직선화는 지양하고 유수역의 굴곡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의 흐름과 자연성을 훼손하는 횡적구조물(보 및 낙차공, 교량 등)에 대해서는 철거 및 자연친화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li> <li>- 교량 위치, 현황사진, 이용현황, 교량제원(교량 형태, 교각 수 등), 노후도, 행하여유고 및 기준 경간장 부족 여부, 홍수위 상승 유발 여부 등 관련 자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별적 재가설 계획 수립</li> <li>- 보 및 낙차공의 위치, 현황사진, 시설물 현황(노후도, 연중, 낙차, 바닥보 호공 설치여부 등)과 기능(이용현황: 취수, 하상보호 등) 등 관련 자료 제시하고 하천의 종적 생태연결성, 단절 홍수위 상승 유발, 기능 상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철거를 우선 검토</li> <li>○ 계획 하천 내 홍수피해 현황(지역, 범위, 원인 등)과 제해위험지구 지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등으로 지정된 습지 이외에도 계획하천 구간 및 계획하천 하류 지역에 대하여 하천형 습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주곡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상가천, 복은점천, 하기천 등)의 공사 및 사업시행의 영향(홍수위 변화 등)을 받는 구간을 평가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li> </ul> </li> </ol> </div>

이○○ 위원 - 3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농민들의 수해 관련 경험(침수 지역 및 피해 범위, 빈도, 침수 양상 등)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현황 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영향 예측에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2. 21.

심의위원 이

강○○ 위원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하천의 선형 변화 최소화, 구간별 하천생태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수립과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용근거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

○ 지형·지질, 등·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

○ 생태·경관 환경이 우수한 지역 통과, 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 계획 시행 시 사업지역의 지형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호안 조성 시 법면 환경사 조성,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함.

강○○ 위원 - 2

3. 대안

○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장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강수, 기상,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하천의 지형·형상 등 생태적 보전 가치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한 수리·수문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시행

○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정은시설(주거지역, 가족사육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도면을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시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함. 특히 하천경비 공사 예정구역의 경우 인접한 마을 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 기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2023. 12.

심의위원 강

신○○ 위원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에 있어서 계획(하천기본계획)의 특성상 운영시의 영향도 평가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시간적 범위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예: 자연환경자산, 수질에 대한 관리 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시간적 평가범위 설정(p.37)에 있어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수질을 포함한 수환경의 보전 등은 운영시에 대한 영향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것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문공고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외에도 현수막, 이장단회의 등을 통한 홍보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수단을 추가로 강구하여 주민의 건 수렴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7.2.4절의 설명회 장소 협의(p.41), 7.2.5절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p.42) 등과 관련하여 평가준비서에는 전라북도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거나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계획한 바, 이는 사업대상지, 시행자, 승인권자 등으로 볼 때, 적정하지 않으므로 충청북도 (혹은 영동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충청북도(혹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계획으로 수정하여야 함 것임.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주곡천 하천기본계획은 계획의 특성상 수계에 따라 상류하천인 여러 소하천과 하류하천인 삼봉천 등과 연속성이 있으므로 이들 상류하천에 대한 계획수립여부 및 수립된 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이·치수 분야는 물론 생태적 연속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 지야 할 것임.

2024. 1. 16.

심의위원 신

☑ 정○○ 위원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주곡천은 영동읍에 걸쳐있는 긴 하천으로 수많은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은 하천(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통수능 부족 및 침수위험 등 위험 개선 지역으로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침수 방지 등 재해위험 개선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함
3. 대안
  - 공사 중 방지 및 해당지역 내 환경 파괴 시 공사방식 대안과 환경보존 대안은 철저히 계산되어야 함
4.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항목, 범위, 방법 등은 현지 조사 및 실사하여 반영
  - 천연기념물 등 생태 보호와 환경 보호 방법 철저히 검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마을별 설명회 및 이장 등 거주민 의견 적극 반영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내 하천 상태 및 토지 활용은 타당함

2024. 2. .

심의위원    환경과장   

☑ 김○○ 위원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과 범위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치수계획 대안1(100년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함.
3. 대안
  - 배수시설부지 확보검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정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해당 지역주민과 함께 전라북도의 적극 의견수렴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최근 들어 기후온난화로 인한 재난급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치수계획에 적극검토 반영바랍니다.

2024. 1. .

심의위원   

☑ 정○○ 위원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하천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하천환경계획 수립함에 있어 하천(소하천)의 환경영향(침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은 하천(소하천)의 환경영향(침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소하천)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2. 토지이용 구상안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의견 없음
3. 대안 계획 수립 및 재해위험에 따른 대안별 환경영향 비교 분석을
  - 적절하게 실시하였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은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 환경조사 및 (2023-12)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은 필수반영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4. 02. .

심의위원   

☑ 박○○ 위원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으로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이 적절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항목에 적절하게 선정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함.
3. 대안
  -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이 적절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4. 01. .

심의위원

### 3.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금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최○○)	<p>☑ 총괄의견</p> <p>○ 하천의 이·치수 기능 및 환경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p> <p>- 자연환경보전관련 지역,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생태자연도, 식생 등 확인) 등 하천 주변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사·예측범위 확대</p>	<p>○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그 설정 근거를 제시함</p> <p>- 자연환경보전관련 지역,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등 하천 주변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사·예측범위 확대함</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의견없음</p>	-
	<p>3. 대안</p> <p>○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설정해 대안별로 환경적 측면을 비교·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비교를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그 사유 제시</p> <p>- 대안별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여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이때 하천의 홍수방어 능력 확보 대안(축제, 보축, 하도정비 등)을 계획구간별로 상세히 비교</p>	<p>○ 대안별로 환경적 측면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p> <p>-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비교를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그 사유 제시함</p> <p>- 현재 주곡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이 수립중이며, 수립지침 및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및 결정하였음.</p>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금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보 및 낙차공 등 횡단시설물 별로 현황(노후도, 연장, 낙차, 실이용 여부 등)과 기능(취수, 하상보호 등) 및 기능 상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안(철거, 존치, 재가설)을 상세히 비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시설물의 경우 현황, 기능상실 여부 및 시설물검토를 통해 철거, 존치, 재가설 계획을 제시하였음.</li> </ul>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에 따른 현황, 사업계획에 따른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동·식물상 조사는 동·식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 하천이 자연경관 및 생태적으로 인근지역과 연결된 경우 수변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평가 시행</li> <li>- 수질조사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현황을 파악하고 중권역별 목표수질과 연계한 수질 목표를 설정해 관리방안 제시</li> <li>-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 방향 설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함</li> <li>- 동·식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 조사하였으며, 수변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함</li> <li>- 수질조사시 하천 상·하류 두지점을 선정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중권역별 목표수질과 연계한 수질 목표를 설정해 관리방안 제시함</li> <li>- 기수립 개수현황, 홍수이력, 재해위험지구 등을 조사하였으며 하천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을 통해 치수안전성을 확보하는 정비방향을 설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 실행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설정함</li> </ul>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금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면적률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6. 기타 ○ 금회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	6. 기타 ○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설정함 -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한국환경 연구원 환경평가 본부 (이○○)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본 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일원에 위치한 주곡천 하천기본계획(전체 하천연장 6.88km)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으로 아래 항목별 의견을 참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p>	<p>○ 항목별 의견을 참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였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주곡천이 합류하는 삼봉천과 주곡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상가천, 묵은점천, 하기천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p>	<p>○ 삼봉천 외의 하천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별도 진행함</p>
	<p>○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이외에도 하천구역과 홍수범람 범위 등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p>	<p>○ 현재 주곡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초조사를 통해 주곡천 유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음.</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하천 정비시 현재의 하천 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12쪽)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하폭확장(하폭 공식에 따른 일괄적인 하폭 확장) 및 하도정비(저수로 포함 하상 준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p>	<p>○ 하폭확장 및 하도정비는 최소화하여 계획함</p>
	<p>3. 대안</p> <p>○ 기수립과 금회 설계빈도가 상이한 경우 이들 설계빈도 대안들(50년, 80년, 100년 빈도 등)에 대하여 홍수량과 홍수위, 침수범위, 피해예상 토지 등을 비교하여 하천의 설계빈도의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33쪽)</p>	<p>○ 금회 주곡천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빈도 및 최근 상향 등을 참고하였으며 주곡천의 토지이용현황, 피해예상범위, 하천 및 인접구역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수립과 동일한 100년 빈도를 채택하였음.</p>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한국환경 연구원 환경평가 본부 (이○○)	※ 기수립 설계빈도 50년과 금회 설계빈도 100년의 차이가 크므로(33쪽) 사업계획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대안 검토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함	※ 주곡천의 기수립과 금회 재수립 계획 빈도는 모두 100년 빈도이며, 사업계획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였음.
	○ 하폭확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하천 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만을 후퇴시키는 대안 및 제방만 증고하는 보축 대안을 다른 대안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산지와 인접한 지역, 보호 대상 토지면적이 작은 경우 하천 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한 홍수범람원 관리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호안 조성이 필요한 경우 현재 호안의 식생 천이 등 자연성을 고려하여 제방 축제 및 보축으로 인한 인공호안 조성을 지양하여 기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제방 계획 수립시 급경사 호안 조성 과 과도한 하천 직선화는 지양하고 우수역의 굴곡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	○ 하폭이 부족한 구간에 대한 확폭 계획시 하천의 연속성,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 산지 등 보호대상지의 면적이 작은 경우,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음.  - 금회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친환경적인 호안공법들을 제시하여 향후 세부설계 및 공사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방 계획 수립 시 하천 직선화는 지양하였으며, 하천 유수의 흐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하천의 흐름과 자연성을 훼손하는 횡적구조물(보 및 낙차공, 교량 등)에 대해서는 철거 및 자연친화적 기법을 고려하시기 바람  - 교량 위치, 현황사진, 이용현황, 교량제원(교량 형태, 교각 수 등), 노후도, 형하여우고 및 기준 경간장 부족 여부, 홍수위 상승 유발 여부 등 관련자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별적 재가설 계획 수립	○ 교량, 보 및 낙차공 계획시 인근 주민 이용, 시설물의 노후정도 및 개수계획을 고려하였으며 재가설 되는 시설물의 경우 하천생태계를 고려하도록 제시하였음.  - 시설물의 노후도를 고려하고 하천설계기준에 의거한 시설물 능력검토를 실시하여 재가설계획 수립하였음.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한국환경 연구원 환경평가 본부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 및 낙차공의 위치, 현황사진, 시설물 현황(노후도, 연장, 낙차, 바닥 보호공 설치여부 등)과 기능(이용현황: 취수, 하상보호 등) 등 관련 자료 제시하고 하천의 종적 생태연결성, 단절 홍수위 상승 유발, 기능 상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후 철거를 우선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 주민이용 등을 조사하였으며 하천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재가설시 육수생물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공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하천 내 홍수피해 현황(지역, 범위, 원인 등)과 재해위험지구지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회 주곡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조사를 위하여 위험개선지구가 해제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등으로 지정된 습지 이외에도 계획하천 구간 및 계획하천 하류 지역에 대하여 하천형 습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하천 구간 및 계획하천 하류 지역에 대하여 하천형 습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곡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상가천, 목은점천, 하기천 등)의 공사 및 사업 시행의 영향(홍수위 변화 등)을 받는 구간을 평가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봉천 외의 하천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별도 진행함</li> </ul>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농민들의 수해 관련 경험(침수 지역 및 피해 범위, 빈도, 침수 양상 등) 및 범정보호종의 서식현황 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영향 예측에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수해 관련 경험 및 범정보호종의 서식현황 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영향 예측에 참조하겠음</li> </ul>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도 환경정책과 환경협력교 육팀장 (강○○)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하천의 선형 변화 최소화, 구간별 하천생태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수립과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함</li> <li>○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보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수립과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함</li> </ul>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용근거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분석하였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용근거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조사범위 설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설정함</li> </ul>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li> </ul>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도 환경정책과 환경협력교 육팀장 (강○○)	○ 생태·경관 환경이 우수한 지역 통과, 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 생태·경관 환경이 우수한 지역 통과, 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도록 함
	○ 계획 시행 시 사업지역의 지형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호안 조성 시 법면 완경사 조성,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함.	○ 호안 조성 시 법면 완경사 조성,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마련함
	3. 대안 ○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No action을 포함한 3개의 대안을 마련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강수, 기상,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하천의 지형·형상 등 생태적 보전 가치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 강수, 기상,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였으며, 하천의 지형·형상 등 생태적 보전 가치 여부를 고려함
	○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한 수리·수문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	○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한 수리·수문 영향예측을 제시함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p>도 환경정책과 환경협력과 육팀장 (강○○)</p>	<p>○사업시행으로 인한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시행</p>	<p>○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함</p>
	<p>○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주거지역, 가축사육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도면을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p>○공사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함.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의 분포현황을 도면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함</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사업시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함. 특히 하천정비 공사 예정구역의 경우 인접한 마을 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	<p>○주민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함. 특히 하천정비 공사 예정구역의 경우 인접한 마을 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p>
	<p>6. 기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을 제시하였으며,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p>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국토환경 연구원 (신○○)	☑ 총괄의견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에 있어서 계획(하천기본계획)의 특성상 운영시의 영향도 평가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시간적 범위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예: 자연환경자산, 수질에 대한 관리 등)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수질 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영향예측에서 제외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3. 대안 ○ 의견없음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시간적 평가범위 설정(p.37)에 있어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수질을 포함한 수환경의 보전 등은 운영시에 대한 영향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등은 운영시 영향이 없으므로 영향예측에서 제외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문공고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외에도 현수막, 이장단회의 등을 통한 홍보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수단을 추가로 강구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람	○ 현수막 등의 홍보수단을 추가로 실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홍보를 진행함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국토환경 연구원 (신○○)	○ 7.2.4절의 설명회 장소 협의(p.41), 7.2.5절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p.42) 등과 관련하여 평가준비서에는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거나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계획한 바, 이는 사업대상지, 시행자, 승인권자 등으로 볼 때, 적정하지 않으므로 충청북도(혹은 영동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충청북도(혹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 영동군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할 것으로 계획함
	6. 기타 ○ 주곡천 하천기본계획은 계획의 특성상 수계에 따라 상류하천인 여러 소하천과 하류하천인 삼봉천 등과 연속성이 있으므로 이들 상하류하천에 대한 계획수립여부 및 수립된 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이치수 분야는 물론 생태적 연속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상하류 소하천에 대한 계획수립여부 및 수립된 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이치수 분야 및 생태적 연속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영동군청 환경과장 (정○○)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곡천은 영동읍에 걸쳐있는 긴 하천으로 수많은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곡천은 수많은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환경조사를 철저히 함</li> </ul>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은 하천(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통수능 부족 및 침수위험 등 위험 개선 지역으로 적절함</li> </ul>	-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수 방지 등 재해위험 개선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위험 개선을 고려함</li> </ul>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중 방식 및 해당지역 내 환경 파괴 시 공사방식 대안과 환경보존 대안은 철저히 계산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보존을 위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검증함</li> </ul>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항목, 범위, 방법 등은 현지 조사 및 실사하여 반영</li> <li>○ 천연기념물 등 생태 보호와 환경 보호 방법 철저히 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조사시 항목, 범위, 방법 등을 적절하게 고려함</li> <li>○ 천연기념물 등 생태 보호와 환경 보호 방법을 강구함</li> </ul>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 설명회 및 이장 등 거주민 의견 적극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를 통해 거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함</li> </ul>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내 하천 상태 및 토지 활용은 타당함</li> </ul>	-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사)자연보 호중앙연맹 영동군협의 회 (김○○)	☑ 총괄의견 ○ 평가항목과 범위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치수계획 대안1(100년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 치수계획 100년 기준으로 선정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함	-
	3. 대안 ○ 배수시설부지 확보검토	○ 배수시설부지 확보에 대해 검토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정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해당 지역주민과 함께 충청북도의 적극 의견수렴	○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최근 들어 기후온난화로 인한 재난급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치수계획에 적극검토 반영바랍니다.	○ 치수계획의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함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마을대표 (정○○)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li> </ul>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li> </ul>	-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미수립 및 계획수립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적절하게 실시 하였음.</li> </ul>	-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였음.</li> </ul>	-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수렴은 적극반영하여야 함.</li> </ul>	○ 의견을 적극반영하였음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	

평가위원	평가분야 및 평가의견	반영사항(미반영 사유)
영동군 영동읍 중가리 마을대표 (박○○)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본 계획은 ‘주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으로 대상 지역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이 적절함.</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항목에 적절하게 선정됨.</p>	-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적절함</p>	-
	<p>3. 대안</p> <p>○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이 적절함.</p>	-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였음.</p>	-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p>	○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음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의견 없음.</p>	-	

##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4.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가.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나. 공개시기 및 기간

-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이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

#### 다. 공개방법

- 계획수립 기관의 정보통신망(영동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라. 의견제출 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공개된 평가항목 등에 대해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 4.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가. 평가서 초안의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영동군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토록 함

#### 나. 평가서 초안 공람

-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은 법 규정에 의거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함.
- 영동군의 해당 동사무소 등 대상 지역에 1개소 이상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공람 장소는 영동군과 추후 협의).
- 계획 대상 지역인 영동군 홈페이지에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
  - 설명회 장소는 영동군과 협의하여 결정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 라. 의견제출 방법

-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동군에 의견제출

#### 마.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인 영동군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인 영동군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토록 할 계획임.